

집합투자규약 변경대비표

1. 투자신탁의 명칭 : PCA 신종 MMF 제 A-2 호[국공채]
2. 집합투자규약 변경 사유 : 시행령 개정에 따른 투자대상자산 및 투자제한 등 주요 조항 변경
3. 집합투자규약 변경시행일 : 2009년 9월 10일
4. 집합투자규약 변경 주요 내용 :

변경 전 집합투자규약 내용	변경 후 집합투자규약 내용
<p>제2조(용어의 정의)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 3. <생략></p> <p><u>4. “단기금융(MMF)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 전부를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주권관련사채권 및 사모사채권은 제외) 및 기업어음증권,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예금 증서 및 금융기관에의 예치, 단기대출 등의 원화표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법 시행령제241조2항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u></p> <p><u>제17조(투자대상자산등)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u></p> <p>1.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p> <p>2. 법 시행령제79조제2항제5호에 따른 어음으로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 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p> <p>3. 양도성예금증서</p> <p>4. 제2호의 금융기관에의 예치(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를 포함한다)</p> <p>5. 법 시행령 제34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금융기관에 대한 30일 이내의 단기대출</p> <p>6. <생략></p>	<p>제2조(용어의 정의)이 신탁계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각호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용어에 관하여는 관련법령과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p> <p>1. ~ 3. <현행과같음></p> <p><u>4. “단기금융(MMF)투자신탁”이라 함은 투자신탁재산 전부를 원화표시 단기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신탁으로 법 시행령제241조2항의 방법으로 운용되는 투자신탁을 말한다.<변경><집합투자규약변경시행일: 2009년9월10일></u></p> <p><u>제17조(투자대상자산등)①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원화로 표시된 자산으로서 다음 각호의 투자대상 및 투자방법으로 운용한다. 다만, 채무증권(법제4조제3항의 국채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 기업어음증권에 한하며, 환매조건부채권 매매는 제외한다)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 이상을 운용하여야 한다. <변경><집합투자규약변경시행일:2009년9월10일></u></p> <p>1. 남은 만기가 6개월 이내인 양도성예금증서</p> <p>2. 남은 만기가 5년 이내인 국채증권,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 사채권(법제71조제4호나목에 따른 주권관련 사채권 및 사모의 방법으로 발행된 사채권은 제외한다) 및 기업어음증권.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p> <p>3. 남은 만기가 1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어음 (기업어음증권은 제외한다)으로서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발행·할인·매매·중개·인수 또는 보증하는 어음</p> <p>4.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p> <p>5. 만기가 6개월 이내인 법시행령 제79조제2항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예의 예치를 포함한다)</p> <p>6. <현행과같음></p>

<p>7. 환매조건부채권매도 8. <생략></p> <p>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에게 단기대출로 운용하는 행위</p> <p>2.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상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주식과 주식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상기의 투자제한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가. <생략>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하며, 이조 제2호 가목의 것은 제외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3. <생략></p> <p>4. 이조 제2호 및 제3호에서 동일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채무증권: 당해 채무증권의 발행인 (다만,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보증인을 기준으로 신용평가 등급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증인을 말한다) 나. 금융기관에의 예치: 당해 금융기관 다. 단기대출·환매조건부매수: 당해 거래상대방(다만, 환매조건부 매수의 경우 당해 환매조건부 매수의 대상자산이 담보되어 있고 시가로 평가한 담보가치가 거래금액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매조건부매수 대상자산의 발행인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5.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 6.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의 제1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투자하는 행위, 다만, 환매조건부매수의 경우에는 남은 만기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7. 남은 만기가 6개월 이상의 제17조 제1항 제3호 내지제4호에 투자하는 행위 8.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이 아닌 다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9.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10.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의 5%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하는 행위</p>	<p>7. 환매조건부 매수 및 매도 8. <현행과같음></p> <p>제19조(운용 및 투자제한)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 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변경><집합투자규약변경시행일:2009년9월10일> 1.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법 시행령 제84조에서 정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과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다만, 집합투자업자의 대주주나 계열회사인 이해관계인과는 다음 각 목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없다. 가. 법 제83조제4항에 따른 단기대출 나. 환매조건부매수(증권을 일정기간 후에 환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수하는 것을 말한다)</p> <p>2.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상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주식과 주식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상기의 투자제한을 적용 받지 아니한다. 가. <현행과같음> 나.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가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법제4조 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법시행령 제79조 제3항 제5호 각목의 금융기관이 할인·매매·중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까지 투자하는 경우</p> <p>3. <현행과같음></p> <p>4. 증권을 대여하거나 차입하는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 5. 남은 만기가 1년 이상인 국채증권에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운용하는 행위 6. 이 투자신탁이 보유하고 있는 증권총액의 5%를 초과하여 환매조건부매도를 하는 행위 7. 이 투자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90일을 초과하는 행위 8. 이 투자신탁재산으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하는 행위 가.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것 나. 위의 가목과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 9. 다른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에 자산총액의 5%를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p>
---	---

<p>11. 이 투자신탁재산의 남은 만기의 가중평균이 90일을 초과하는 행위</p> <p>12. 자산의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이 환율·증권의 가치 또는 증권지수의 변동에 따라 변동하거나 계약시점에 미리 정한 특정한 신용사건의 발생에 따라 확대 또는 축소되도록 설계된 것</p> <p>13. 제12호와 같이 원리금 또는 거래금액, 만기 또는 거래기간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것</p> <p>제33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p> <p>제49조(금전차입 등의 제한)<신설></p>	<p>제33조(이익분배) ①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 재산에서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제242조에 따른 이익금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분배를 유보한다. <변경><집합투자규약변경시행일:2009년9월10일></p> <p>제49조(금전차입 등의제한) ① 집합투자업자는 투자 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26조에 따른 수익증권의 환매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환매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2. 제38조에 따른 매수청구가 대량으로 발생하여 일시적으로 매수대금의 지급이 곤란한 때 <p>②제1항에 따라 투자신탁의 계산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그 차입금의 총액은 차입 당시 투자신탁 계산 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제1항에 따른 금전차입의 방법, 차입금 상환 전 투자대상자산의 취득 제한 등은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p> <p>④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 중 금전을 대여 (제17조 제4호의 단기대출을 제외한다)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재산으로 이 투자신탁 외의 자를 위하여 채무보증 또는 담보제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집합투자규약변경시행일:2009년9월10일></p> <p><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09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	---